2025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4차 -

2025. 1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단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3

4. 감사 중점사항 ····· 3

Ⅱ. 감사결과 ····· 4

1. 총평 ····· 4

2. 지적사항 총괄 ····· 4

3. 지적사항 요약 ····· 4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6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6

3. 모범사례 일람표 ····· 6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단에서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과 기획평가원 직원의 연구개발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주요 점검유형, 사업부서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간접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표 1]과 같이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이 의심되는 총 4개의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표 1] 점검대상 과제

연번	과제번호	과제명
1	☆☆☆☆☆ ☆☆☆	◆◆◆◆◆◆◆◆◆◆◆◆◆◆◆◆◆◆◆◆◆◆◆◆
2	○○○○○ ○○○	★★★★★★★★★★★★★★★★★★★★★★★★★★
3	◇◇◇◇◇ ◇◇◇	□□□□□□□□□□□□□□□□□□□□□□□□□□□□□□
4	◁◁◁◁◁ ◁◁◁	▼▼▼▼▼▼▼▼▼▼▼▼▼▼▼▼▼▼▼▼▼▼▼▼▼▼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3일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3명(교차감사인 1명)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16일까지 4일간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내·외부 감사인 검토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29일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감사 중점사항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의 적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사업관리시스템” “연구지원전문가교육 전산관리시스템” 등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의심과제를 점검하였다.

가. 제보사항 부정사용 의심과제 점검

또한 사업부서 제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부정사용 의심과제를 대상으로 기획평가원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및 “사업관리시스템” 내 협약 정보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점검하였다.

나. 영리기관의 간접비 인건비 부적정 의심과제 점검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간접비로 인건비를 집행한 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현황과 “연구지원전문가[1] 전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산업기술 R&D 실무과정 교육[2] 이수 내역을 비교하여 영리기관의 간접비 인건비 사용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출하여 부적정 집행내역에 대해 점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1) 연구지원전문가 :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함

2) 산업기술 R&D 실무과정 교육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업기술 R&D 사업 수행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연구 성과 향상 도모를 위해 RCMS 사용법, 규정 및 연구개발비 기준 등의 교육과정을 상시로 운영 중

Ⅱ. 감사결과

1. 총평

영리기관의 간접비 인건비 집행 기준 미 준수, 연구재료비의 연구개발 과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사례를 점검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을 유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합계			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경고(인원)	주의(팀)	개선	권고	통보	고발(인원)	현지조치	모범사례(인원)
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5	-	4 (256,452)	-	-	4 (256,452)	1 (231,251)	-	3 (25,201)	-	-	-	-	-	-	-	1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연구재료비를 연구개발과제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252,581,230원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231,250,628원의 회수가 필요하다.(시정 1건)

【현지조치】

1)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본부(◎◎◎◎◎◎실), □□□□□본부(▲▲▲▲실) 및 ●●●●●●●본부(♤♤♤♤♤실)은 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25,201,320원을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로 복원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지시정 3건)

【모범사례】

1)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관련자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모범사례 1건)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231,250,628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5. 12.	2026. 2. (2개월)	◆◆◆◆◆◆ 실
▲▲▲▲▲▲▲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8,251,32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	-	◎◎◎◎◎◎ 실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3,27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	-	▲▲▲▲실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13,68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	-	♤♤♤♤♤실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8,251,32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시정	◎◎◎◎◎◎ 실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3,27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시정	▲▲▲▲실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13,68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시정	♤♤♤♤♤실

※ 현지조치사항 3건은 처분요구사항 2번에 대한 현지조치 결과에 해당함

3. 모범사례 일람표

제목	순번	관계부서	성명	공적요약	기대효과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3	◆◆◆◆◆ ◆실	●●●	ㅇ연구개발과제의 부정사용 제보를 사전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감사실·법무실과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연구개발과제(1개)에서 총 232백만원의 부적정 집행액 회수에 기여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

첨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1,250,628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실)	처분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2026.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

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는 [표 1]과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총 개발기간	기관 역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

입 대금 지급,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관 내부 과제의 물품구매를 위해 구입 물품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조정하여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RCMS에 첨부하고, [표 2]와 같이 252,581,230원의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다.

[표 2] 거래처별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내역

연차	거래처명	RCMS 집행 금액(원)	과제 수행 목적 사용 금액(원)	부적정 집행금액(원)
1	▼▼▼▼▼▼	8,595,000	697,960	7,897,040
	◎◎◎◎◎◎	5,726,000	2,945,500	2,780,500
	□□□□□	65,787,030	16,675,700	49,111,330
	♠♠♠♠♠♠	40,375,000	26,794,380	13,580,620
	▶▶▶▶	8,578,300	3,754,260	4,824,040
	♧♧♧♧	3,852,000	263,000	3,589,000
	♤♤♤♤♤	2,062,500	-	2,062,500
	■■■■ ■■■■	3,150,000	2,630,000	520,000
	▲▲▲▲▲▲	7,029,000	-	7,029,000
	소 계	145,154,830	53,760,800	91,394,030
2	▼▼▼▼▼▼	4,775,360	1,379,980	3,395,380
	♧♧♧♧	18,640,000	11,400,000	7,240,000
	♠♠♠♠♠♠	2,700,000	-	2,700,000
	□□□□□	137,369,600	56,653,760	80,715,840
	■■■■■■	39,118,320	9,846,660	29,271,660
	◇◇◇◇◇	29,174,770	12,823,110	16,351,660
	▶▶▶▶	14,920,227	6,059,790	8,860,437
	▲▲▲▲▲▲	38,698,223	26,046,000	12,652,223
	소 계	285,396,500	124,209,300	161,187,200
합 계		430,551,330	177,970,100	252,581,230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실은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1,250,628[3]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3) 회수 대상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부적정 집행액

단계-연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부적정 집행액(원)	회수 대상액 (원)
0-1	290,000,000	7,500,000	97.5	91,394,030	89,089,979
0-2	316,800,000	42,400,000	88.2	161,187,200	142,160,649
합계					231,250,628

일련번호	2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현지 시정	재정상 조치금액	25,201,32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본부(▲▲▲▲실) ●●●●●●●본부 (♤♤♤♤♤실)	처분요구일	-	회신 기한일	-

현 지 시 정

제　　목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본부(◎◎◎◎◎◎실)

□□□□□본부(▲▲▲▲실)

●●●●●●●본부(♤♤♤♤♤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사업에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 연구개발과제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지원한 '□□□□□

▼▼▼▼▼▼▼▼▼▼▼▼▼▼▼'은 ♤♤♤♤♤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제1항56호에 따르면 연구지원전문가는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동 요령 [별표 5]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르면,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사업, ▲▲▲▲▲▲▲▲▲▲▲▲▲▲▲▲▲사업 및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 ◆◆◆◆ 및 ☆☆☆☆ ☆☆☆☆는 [표 1]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 ◆◆◆◆ 및 ☆☆☆☆ ☆☆☆☆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총 개발기간	기관 역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천원)
▲▲▲▲▲▲▲▲사업					
♣♣♣	★★★★★★★★★★★★ ★★★★★★★★★★★★ ★★ (○○○○○○○○)	2024.07.01. ~2027.12.31	주관	2,917,900	1,467,100
▲▲▲▲▲▲▲▲▲▲▲▲▲▲▲▲▲사업					
◆◆◆◆	□□□□□□□□□□□□□□□□ □□□□□□□□□□□□□□□□ (◇◇◇◇◇◇◇◇)	2025.07.01. ~2028.12.31	공동	1,514,000	390,000
▲▲▲▲▲▲▲▲▲▲▲▲▲▲▲▲▲사업					
☆☆☆☆ ☆☆☆☆	▼▼▼▼▼▼▼▼▼▼▼▼▼▼ ▼▼▼▼▼▼▼▼▼▼▼▼ (◁◁◁◁◁◁◁◁◁)	2025.04.01. ~2029.12.31	공동	5,700,000	1,200,000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 ◆◆◆◆, ☆☆☆☆ ☆☆☆☆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해 간접비 인건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해당 간접비 인건비를 집행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여부를 “연구지원전문가교육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 운영요령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 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인건비 집행 내역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단계-연차	사용일자	항목	연구지원인력	지급용도	사용금액(원)
○○○○○○○○	♣♣♣	0-2	2025.11.25	인력지원비	♥♥♥	11월 간접비	750,120
			2025.10.24	인력지원비	♥♥♥	10월 간접비	750,120
			2025.09.25	인력지원비	♥♥♥	소부장9월 간접비	750,120
			2025.08.25	인력지원비	♥♥♥	8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1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2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3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4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5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6월 간접비	750,120
			2025.08.05	인력지원비	♥♥♥	7월 간접비	750,120
			소 계				8,251,320
◇◇◇◇◇◇◇◇	◆◆◆◆	1-1	2025.10.22	인력지원비	◇◇◇	인력지원비	970,000
			2025.09.01	인력지원비	◇◇◇	8월 인력지원비	1,110,000
			2025.08.25	인력지원비	◇◇◇	인력지원비	1,190,000
			소 계				3,270,000
◁◁◁◁◁◁◁◁	☆☆☆☆☆☆☆☆	1-1	2025.11.2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10.2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29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1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1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1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1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2025.09.10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710,000
			소 계				13,680,000
합 계							25,201,320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 ◆◆◆◆, ☆☆☆☆ ☆☆☆☆는 부적정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로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지감사 기간 중에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로 복원 조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실, ▲▲▲▲실 및 ♤♤♤♤♤실은 영리기관의 간접비 중 인건비 사용기준을 미준수한 연구개발비 집행 금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지조치 사항

① ◎◎◎◎◎◎**실**은 동 감사 기간 중 "★★★★★★★★★★★★★★★★★★★★★★★★★★★★" 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8,251,320원을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로 복원하도록 조치하여 완료하였다. **【현지시정】**

② ▲▲▲▲**실**은 동 감사 기간 중 "□□□

③ ♤♤♤♤♤실은 동 감사 기간 중 “▼▼▼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실)	처분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소 관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 ●●● 전임은 본인이 담당하는 연구개발과제[4]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대표이사)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매입 금액의 단가 및 수량 임의조정, RCMS(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허위 증빙서류 첨부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정황을 파악한 후, 이를 확인하고자 i) 연구비 집행내역 사전 검토, ii)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 전임은 신고자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고

4) 과제명(과제번호) : ◆◆◆◆◆◆◆◆◆◆◆◆◆◆◆◆◆◆◆◆◆◆◆◆◆(☆☆☆☆☆☆☆☆)

자(대표이사)와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고 경위, 부적정 사용 내역에 의견을 청취하고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부적정 집행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 및 회수액 산정 등이 필요하여 감사실, 법무실에 의뢰하여 합동 현장점검(2025. 10. 22. ~ 10. 23.)을 실시하였고, ●●● 전임은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 현장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 전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총 252,581,230원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액 적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방지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본부(◆◆◆◆◆◆실) 5급(전임) ●●●

특정감사(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4차) 결과 모범사례

소 속	직 급	성 명
◆◆◆◆◆◆실	5급	●●●

제목: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수행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연구책임자의 자진신고로 연구비 부정 집행 정황 접수('25.05)

○ 연구개발과제 진행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주)◁◁◁◁) 연구책임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해당 기업의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사실 접수

- 해당 기관 연구재료비 RCMS 등록금액 기준 합산액(477,800천원 가량)

* 기업 재무담당이사가 단가·수량을 부풀려 매입을 금액 조정하고, 협력사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요청한 뒤 해당 자료를 RCMS에 지출 증빙자료로 등록한 사실을 기반으로 자진신고

□ (추진내용) 연구비 부적정 집행 내역 사전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 (사전검토) 자진신고 내용 기반 부적정 집행 내역 확인 등 금액 규모 파악

- 업체별 기존 거래 금액과 RCMS 등록 금액 간 불일치 사실 확인
- 실제 부적정 집행 금액 도출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실태조사 계획

○ (1차, 인터뷰) 자진신고자(연구책임자) 인터뷰 진행 및 확인서 작성('25. 6. 24.)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자진신고자와 피신고인 분리 및 개별 인터뷰 진행
- 신고 사유, 현황 청취 등 인터뷰 진행과 더불어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한 회계검토확인서 작성 완료(확인 금액 : 477,800천원)

* ◆◆◆◆◆◆실, 감사실, 법무실, 과제 담당 회계사 및 자진신고자, 기업 부사장 참석

○ (2차, 현장점검) 감사실의 협조로 특별현장실태조사 합동 추진('25.10.22.)

- 연구개발 계획 대비 실적 및 현장 시제품 확인, 피신고인 인터뷰 진행
- 실 과제 투입 재료 제외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도출 완료(252,584천원)

* ◆◆◆◆◆◆실, □□실, △△실, 과제 담당 회계사 및 기술검토위원, 피신고인 등 참석

□ (추진결과) 감사실 특정감사를 통해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회수 조치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실 확인

-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액 252,581천원 적발 및 회수 조치

*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252,581천원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231,521천원 회수

□ (환류) 사업부서 담당자의 신고·현장점검 역량 강화

○ 연구과제 담당자의 신고 사건 조사를 통해 신고자 보호 노력 → 신고 사건의 연구비 부적정 내역 적발 → 신고사건 조사·현장점검 역량 제고